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98

제출년월일 : 1996. 8. 19.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의결주문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조성면적 10만㎡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처리능력 200Ton/일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정함(안 제3조)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비용부담금 산정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포함 및 분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주변지역지원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와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
- 환경상 영향조사·공개 대상을 조성면적 10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처리능력 200Ton/일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규정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5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 1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 4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부담금 산정) ①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소각시설의 형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결정한다.

제 5 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부담금 분납)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은 택지개발 사업기간중 4회이내 분납할 수 있다.

제 6 조 (지역개발 계획의 반영) ① 영 제19조제2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

행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4.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 7 조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한다.

1.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5.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 8 조 (주민 지원기금의 사용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지원기금을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중 의회와 시장이 각각 2인을 선정
2. 인접 읍면동이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별로 주민 1인씩 의회와 시장이 각각 추가 선정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운영방법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환경상 영향조사·공개) ① 영 제26조제1항3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함은 다음 각호 1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